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대상 확대〉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67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1. 부정경쟁행위 민·형사 및 행정 구제수단 비교	9
2.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수사 개요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13개 행위유형을 정의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행정조사, 시정권고, 형사벌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 등 두 가지 유형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행위 유형은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행위 태양, 침해의 방법, 위법성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의 기타성과도용행위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관시한 바 있어,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에 대한 행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와 기타성과도용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허청장 등이 부정경쟁행위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제2조 제1호아목)¹⁾’과 ‘기타성과도용(제2조제1호과목)²⁾’에 대하여도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³⁾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과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 ----- -----제2조제1호----- ----- ----- -----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 관계 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활동을 말함.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2조제1호 각 목(가목~파목)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13개)을 제시하고,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회복조치를 통해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⁴⁾

그러나 ‘도메인이름 부정취득’(아목)과 ‘기타성과도용’(파목) 행위의 경우 행정조사(제7조)⁵⁾, 시정권고(제8조)⁶⁾ 및 형사벌(제18조)⁷⁾에서는

4)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⁸⁾⁹⁾

이는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행위의 경우 다른 법률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있고,¹⁰⁾ ‘기타성과도용’ 행위의 경우 적용대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됨.¹¹⁾

그런데 ‘기타성과도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포함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축적된 판례¹²⁾를 통해 동 행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도출할 수 있고, ‘도메인이름 부정취득’의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기타성과도용’에 대해서도 다른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행정조사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기타성과도용’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8) ‘참고자료 1. 부정경쟁행위 민·형사 및 행정 구제수단 비교’ 참조

9) 형사벌(제18)의 경우 ‘도메인이름 부정취득’(아목)과 ‘기타성과도용’(파목) 외에 다른 항목도 제외하고 있음.

10)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행위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부정경쟁행위로 도입되었으나 행정조사나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록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11) ‘기타성과도용’ 행위는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나머지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13.7월 신설, ‘14.1월 시행), 이를 행정제재 및 형사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그 적용대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한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됨.

12) 시행 후 5년간(‘15.~’19.) 판례 346건, 이후 5년간(‘20~’24) 판례 포함시, 약 600여건 예상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판시¹³⁾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기타성과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축적된 판례를 통해 성과도용행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특허청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거래질서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특허청은 2017년 12월부터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¹⁴⁾를 개

1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현행 과목을 지칭함)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14) ‘참고자료 2.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수사 개요’ 참조

시하여 그동안 700건 이상의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처리하였음.¹⁵⁾

다만, 행정조사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어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¹⁶⁾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도메인이름 부정취득’과 ‘기타 성과도용’ 행위의 경우 행정조사(제7조) 외에 시정권고(제8조) 및 형사벌(제18조) 적용에서도 동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형사벌의 경우 ‘아이디어 탈취·사용행위’(차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행위’(타목) 등 다른 행위 유형도 제외하고 있으므로 논외로 하더라도,¹⁷⁾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인 시정권고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

15) 부정경쟁행위 등 행정조사 접수 및 종결 현황(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접수	86	66	114	133	152	177	180	908
종결	63	66	71	127	129	131	177	764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기타성과도용행위를 ‘형사벌’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및 특허청은 보충적 일반조항의 특성상 규제 대상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벌 대상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임.

출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11.15. 김경만의원 등 20인 발의, 의안번호 제2113300호) 검토보고(202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¹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¹⁹⁾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보충적 일반조항인 ‘기타성과도용’으로 행정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8

1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참고 1

부정경쟁행위 민·형사 및 행정 구제수단 비교

부정경쟁행위(13가지)	민사	형사	행정조사, 시정명령, 공표 등
가. 유명상표 혼동 행위	○	○	○
나. 유명영업표지 혼동 행위	○	○	○
다. 유명표지 희석화 행위	○	○	○
라. 원산지 허위 표시	○	○	○
마. 생산지 허위 표시	○	○	○
바. 수량오인 표시	○	○	○
사. 해외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국내 사용 행위	○	○	○
아. 도메인 네임 선점 행위	○	×	×
자. 상품 형태 모방 행위	○	○	○
차.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	×	○
카.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	○ 4)보호조치 무력화 only	○
타.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	○	×	○
파. 타인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	○	×	×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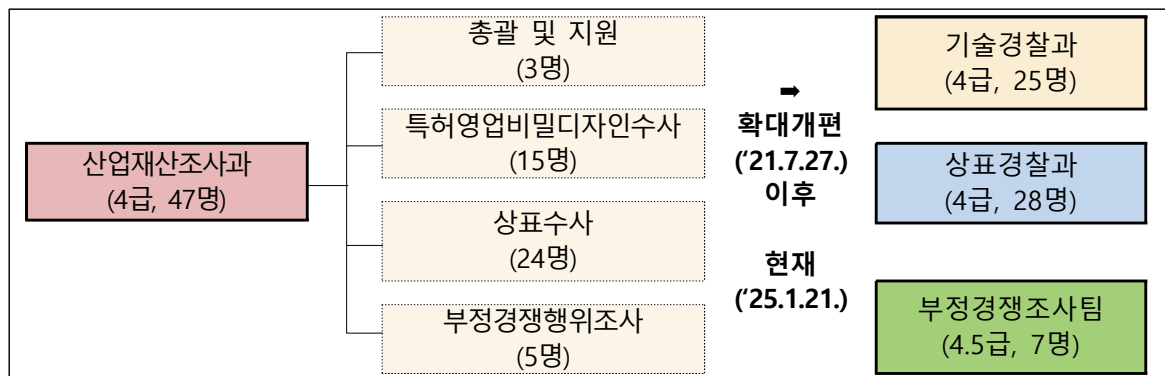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수사 개요

□ 연 혁

- ('10. 9.)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출범, 지역별(대전, 서울, 부산) 사무소 설치
- ('17.12.)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 개시
- ('19. 3.)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하여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출범
 -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8.12.18.) 및 시행('19. 3. 19.)
- ('21. 7.) 기술/상표 경찰 및 부정경쟁조사 조직 확대 개편
 - * 산업재산조사과 →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2명 증원)

□ 조직 구성

- 조사·수사 인력(정원) : 60명(기술경찰 25, 상표경찰 28, 조사관 7)



- 조사·수사

구분	부정경쟁조사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6조
조사 (수사) 범위	부경법 제2조제1호(아목, 파목 제외), 제3조, 제3조의2제1항, 제2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자목, 카목 4) • 기술경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 전반 • 상표경찰: 상표권 침해행위
정원	7명	기술경찰(25명), 상표경찰(28명)

□ 부정경쟁행위 조사 절차

